

부모교육지도자 활동 운영규정 (제5조 휴식지도자)

2001년 3월 10일 제정 / 10차개정: 2021년 5월 21일

5. 휴식지도자

- 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연합(이하 KACE연합)이 실시하는 교재 수정 등에 의한 지도자 재교육 과정, 전국적인 네트워크형성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전국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은 1년에 2회(상반기 : 1월~2월, 하반기 : 8월) 진행된다.
- ② 전국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, 휴식지도자로 간주한다.
- ③ 지도자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강사활동을 한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, KACE연합에 이를 알려 휴식지도자를 신청하면 된다.
- ④ 휴식지도자의 경우,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중지된다.
(예> 강의활동 및 교재구입, 지도자회 활동, 재교육 참여 등)
- ⑤ 3년 미만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이를 소속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부모 교육지도자 워크숍에 참석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거쳐 지도자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. 단, 강의분야 교재개편 및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, 정규과정 참여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⑥ 3년 이상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재전형을 치른 후,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참석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도자 활동을 개시한다. 단, 강의분야 교재개편 및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, 정규과정 참여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⑦ 5년 이상의 휴식지도자가 다시 강의를 개시할 경우, 해당과목 교수법 습득과정(교육비는 50% 할인 적용)을 재이수해야 하며, 재전형을 치뤄야한다. 교육이수 후, 부모교육지도자 워크숍 참석과 강사회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도자 활동을 개시한다.